국세청 National Tax Service	보도참고자료	대한민국 대전환 한국판뉴딜
보도일시	2021. 11. 1.(월) 12:00부터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	

생산 부서: 소득지원국 장려세제신청과
전산정보관리관실 홈택스2담당관

배포 일시: 2021년 11월 1일

담당과장	강승윤 과 장	(044)204-3841
	김학선 과 장	(044)204-2551
담 당 자	이주석 사무관	(044)204-3852
	정학식 사무관	(044)204-2582

근로·자녀장려금, 「기한 후 신청」 11월 30일(화)까지 신청하세요!

- 국세청, 자동응답전화(1544-9944)·손택스·홈택스로 비대면 접수 -

□ **(신청대상)** 국세청(청장 김대지)은 지난 5월에 근로장려금 정기신청(2020년 소득분)을 마무리 하였지만, 미처 **신청하지 못한 가구**를 위해 **'기한 후 신청'** 안내문을 발송하였습니다.

□ **(신청기한) 올해 11월 30일까지** 신청기한이며, 12월부터는 신청을 할 수 없으니 **기한 내에 꼭 신청**하시기 바랍니다.

□ **(신청방법) 자동응답전화, 손택스, 홈택스**로 신청할 수 있고, **모바일 안내문***을 열람하여 **'신청하기'**를 누르면 **'손택스 앱'**에 바로 연결되어 쉽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* 서면 안내문에서 정보무늬를 스캔해도 손택스 앱에 자동 연결

① **자동응답전화**: 1544-9944로 전화하여 음성안내에 따라 신청

② **손택스**: 스마트폰에서 '손택스 앱'을 내려받아 신청

③ **홈택스**: 인터넷(www.hometax.go.kr)에서 접속

※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, 본인이 신청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되면 홈택스에서 신청할 수 있음

□ **(심사 및 지급시기)** 11월 30일까지 신청하시면 장려금 심사를 빨리 진행하여 **내년 1월 말에 지급**할 예정입니다.

※ 기한 후 신청은 산정된 금액의 90%를 지급함(조특법 제100의 7 ②)

1 근로·자녀장려금, 「기한 후 신청」 대상

1. 「기한 후 신청」 도입 취지

❑ **5월 정기신청 기간**에 장려금 **신청을 놓친 가구**를 위해 2014년에 도입하였으며,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(6개월간) '기한 후 신청'을 하면 심사를 한 후 지급하고 있습니다.

2. 신청대상

❑ **가구 유형**에 따라 **소득·재산요건**을 **모두 충족**해야 합니다.

○ **(가구유형)** 배우자·부양가족 유무에 따라 **단독·홑벌이·맞벌이** 가구로 **구분**하며, **1가구**에서 **1명만 신청**할 수 있습니다.

구 분	요 건 ('20. 12. 31. 기준)
단독 가구	배우자, 부양자녀 ('02. 1. 2. 이후 출생), 70세 이상 직계존속 ('50. 12. 31. 이전 출생)이 **모두 없는** 가구
홑벌이 가구	배우자(총급여액 등이 3백만 원 미만)나 부양자녀 **또는**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**있는** 가구(각각 연간 소득금액이 1백만 원 이하)
맞벌이 가구	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

○ **(소득요건)** 2020년에 근로, 사업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고, **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*이 기준금액 미만**이어야 합니다.

* 근로·사업·종교인소득 및 이자·배당·연금·기타소득 포함

구 분	단독 가구	홑벌이 가구	맞벌이 가구
근로장려금	4만~2,000만 원 미만	4만~3,000만 원 미만	600만~3,600만 원 미만
자녀장려금	-	4만~4,000만 원 미만	600만~4,000만 원 미만

*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(중증장애인은 연령제한 없음)의 부양자녀가 있어야 함

○ **(재산요건) 2020. 6. 1.** 현재 부동산·전세금·자동차·예금 등 가구원 전체의 **재산 합계액**이 **2억 원 미만**이어야 하고 **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.**

2 근로·자녀장려금 신청방법

1. 자동응답(ARS)전화: 1544-9944 (이용시간: 06시~24시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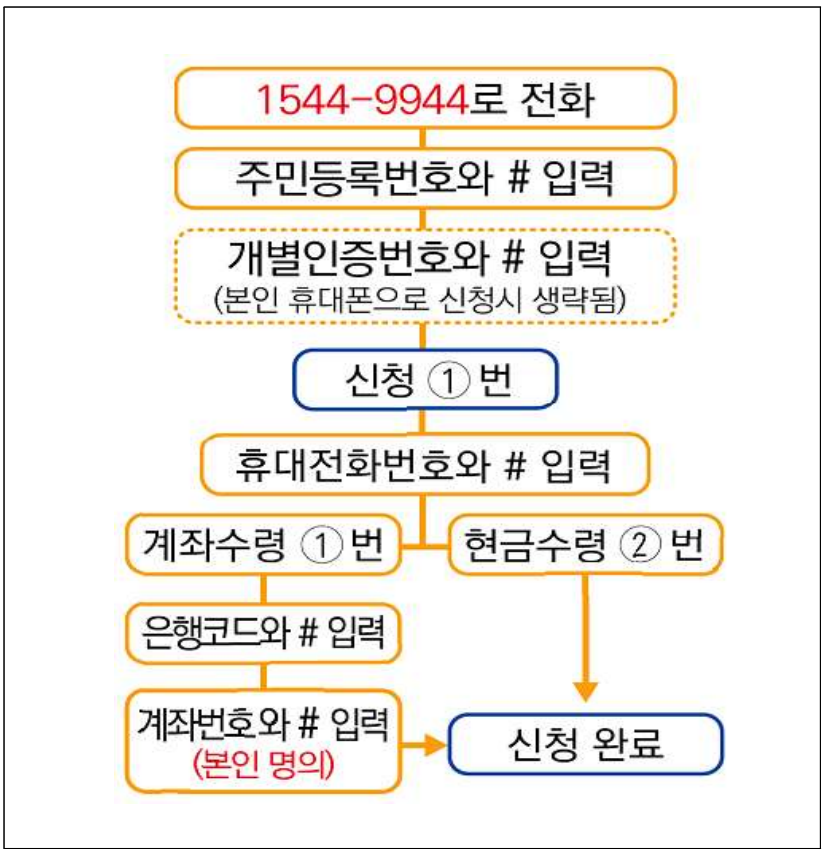
❑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문*을 받은 경우, **1544-9944로 전화**하여 자동응답전화 음성안내에 따라 신청합니다.

* 모바일 안내문 발송(11. 1.), 서면 안내문 발송(11. 12.) 예정

○ ①주민등록번호와 ②개별인증번호*를 입력 후, 신청(1번)을 누르고, ③휴대전화번호를 입력한 후 안내에 따라 ④계좌 또는 현금 수령을 선택하면 **신청**이 **완료**됩니다.

* 국세청에 수록된 신청자의 전화번호에서 전화하면 개별인증번호 입력이 생략됨

< 자동응답전화 신청 절차 >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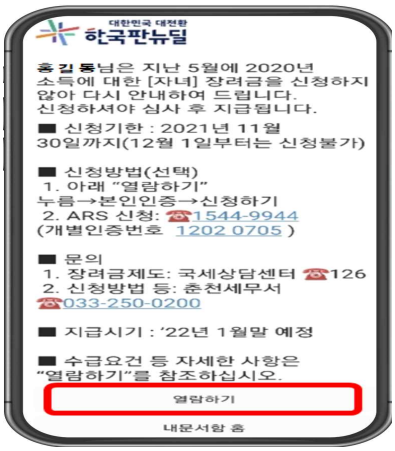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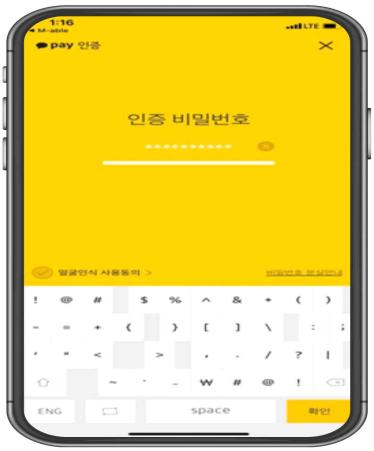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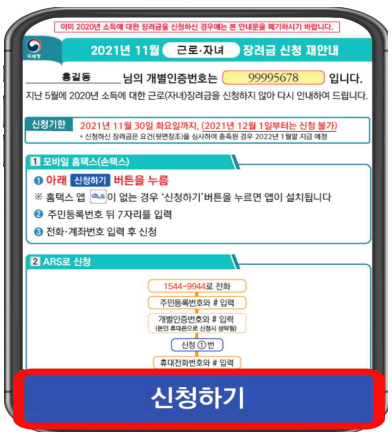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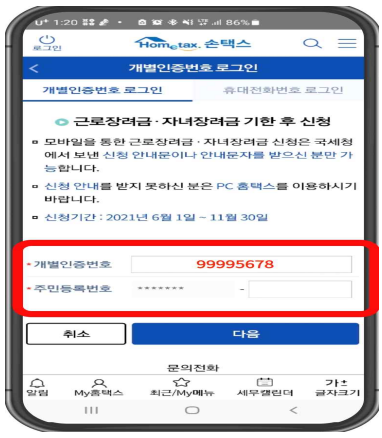
2. 모바일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 (손택스, 이용시간: 06시~24시)

❑ 카카오톡·문자메시지로 받은 ①**모바일 안내문**을 **열람**하고 ②본인인증 후, ③**'신청하기'** 버튼을 누릅니다.

○ 손택스 신청 화면에서 ④**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**를 **입력** 후, 연락처와 환급계좌번호를 확인하고 신청을 종료합니다.

* 기존의 모바일 안내문은 단순히 신청 정보만 제공했으나 안내문에서 바로 장려금 신청이 가능하도록 개선하였습니다.

< 모바일 안내문에서 신청하는 방법 >

<table>
<tr><th>① 카톡·문자 '열람하기' 누름</th><th>② 본인인증</th></tr>
<tr><td>
</td><td>
</td></tr>
<tr><th>③ 모바일안내문 '신청하기' 누름</th><th>④ 손택스(신청 화면) 연결</th></tr>
<tr><td>
</td><td>
</td></tr>
</table>

※ 손택스 앱 이 **없는** 경우: '신청하기' 누르면, 앱 설치 후 손택스 신청 화면으로 연결됨 (아이폰은 앱 설치 후, 다시 '신청하기' 눌러야 개별인증번호가 수록됨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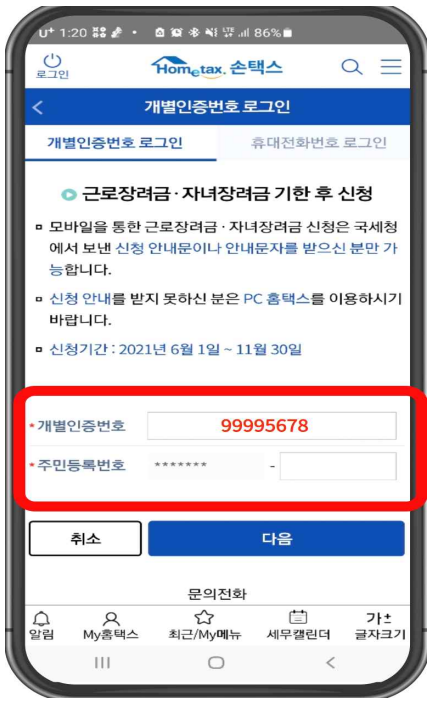
3. 정보무늬로 신청 (손택스, 이용시간: 06시~24시)

❑ **서면 안내문**의 중앙에 위치한 **정보무늬**를 ①스마트폰 카메라로 **스캔**하고, 화면에 보이는 ②메시지를 누릅니다.

○ 손택스 신청 화면에서 ③**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**를 **입력** 후, 연락처와 환급계좌번호를 확인하고 신청을 종료합니다.

* 기존의 서면 안내문은 단순히 신청 정보만 제공했으나 스마트폰으로 정보무늬를 스캔하면 간편하게 신청이 가능하도록 개선하였습니다.

< 정보무늬로 신청하는 방법 >

<table>
<tr><th>① 스마트폰 카메라를 켜서
안내문 정보무늬를 인식시킴</th><th>③ 손택스(신청 화면)가 연결되면
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를 입력</th></tr>
<tr><td>근로·자녀장려금 신청</td><td rowspan="2">
</td></tr>
<tr><td>② 화면에 보이는 메시지를 누름</td></tr>
<tr><td>웹페이지
브라우저에서 m.site.naver.com에 접속하려면 여기를 누르세요</td><td></td></tr>
<tr><td colspan="2">1) 손택스 앱이 있는 경우: 정보무늬 스캔 시, 바로 손택스 신청 화면으로 연결됨
2) 손택스 앱이 없는 경우: 정보무늬 스캔 시, 앱 설치가 자동 실행되며, 앱 설치 후 손택스 신청 화면으로 연결됨</td></tr>
</table>

4. 홈택스(www.hometax.go.kr): (이용시간: 06시~24시)

❑ **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**: 홈택스에 접속하여 신청하거나 접속 없이 개별인증번호를 입력하여 신청합니다. (**간편 신청하기**)

* 복지이음(홈택스 우측 상단에 위치) → 근로・자녀장려금 → 간편 신청하기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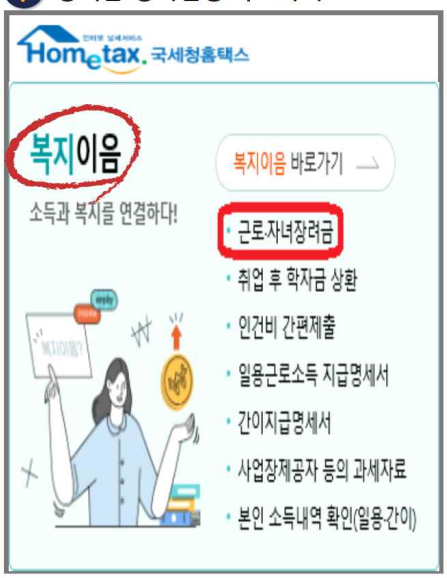
❑ **신청 안내 대상이 아닌 경우**: 안내문을 못 받았지만, 본인이 장려금 신청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되면, 홈택스에 접속하여 신청합니다. (**일반 신청하기**)

* 복지이음 → 근로・자녀장려금 → 일반신청하기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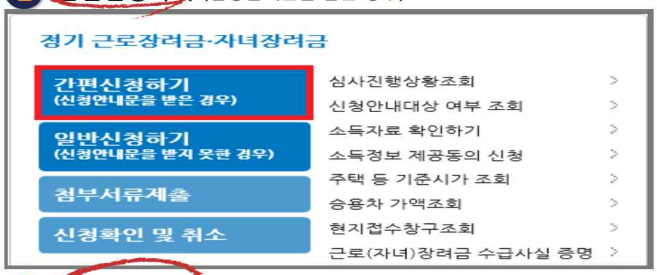
< 홈택스 신청방법 >

인터넷 신청: PC에서 www.hometax.go.kr 접속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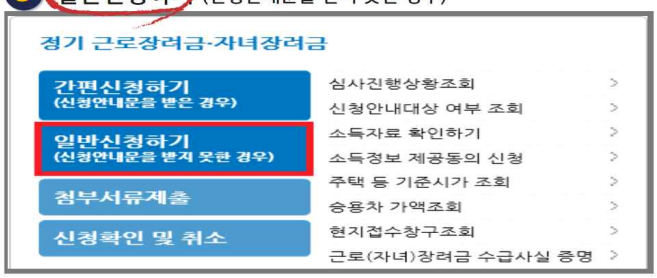
1 장려금 정기신청 바로가기



2 간편신청하기 (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)



3 일반신청하기 (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)



5. 신청도움 (이용시간: 09시~18시, 토・일 제외)

❑ 자동응답전화, 손택스, 홈택스 등으로 장려금 신청이 어려운 경우, 세무서 대표 전화번호로 **전화하여 신청**할 수 있습니다.

* 세무서 대표 전화번호로 전화(12~13시 제외) → ③번 "장려금 일반상담" 선택

3 신청 시 유의 사항

1. 안내문을 받은 경우

❑ 국세청은 소득, 재산자료(금융자료는 신청한 경우에 수집)를 기초로 **수급 가능성이 있는 분**에게 **신청 안내문**을 발송하고 있습니다.

○ 안내문을 받은 경우에는 자동응답전화, 손택스, 홈택스로 신청하거나 세무서에 전화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2.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

❑ **안내 대상인지 여부**는 아래와 같이 **확인**할 수 있습니다.

* 손(홈)택스로 조회(신청/제출→근로·자녀장려금(정기)→안내대상자여부 조회)

❑ **안내 대상이 아닌 경우**에도 신청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되면 **홈택스**에서 신청*하거나 **세무서**로 **전화**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* 복지이음(홈택스 우측 상단에 위치)→근로・자녀장려금→일반 신청하기

3. 계좌번호와 연락처 입력

❑ 장려금을 빠르고 편리하게 지급받으시려면 신청하실 때 **환급계좌번호**와 **전화번호**를 꼭 입력하셔야 합니다.

4. 종합소득세 확정신고

❑ **본인**이나 **배우자**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있으면 **확정신고**를 해야 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.(붙임2 주요문답5 참조)

참고: 1. 신청요건 점검표
2. 주요 문답 사례 (Q & A)

붙임1 신청요건 점검표

2021년('20년 귀속) 근로·자녀장려금 신청요건



가 구

- **가구 기준일**은 2020년 12월 31일 입니다

단 독 가 구	배우자, 18세 미만 부양자녀,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**모두 없는** 가구
홑벌이가구	배우자(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)나 18세 미만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(각각 연간소득금액 1백만원 이하)이 있는 가구
맞벌이가구	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

- 배 우 자 : 가족관계등록부상 배우자
- 18세 미만 부양자녀('02.1.2.이후 출생), 70세 이상 직계존속('50.12.31.이전 출생) :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해당 거주자의 주소나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할 것(단, 직계비속은 제외)
  다만, 중증장애인은 거주자와 동일 주소 또는 거소에 거주하는 경우 연령제한 없음

소 득

- **2020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기준금액(단독 20백만원, 홑벌이 30백만원, 맞벌이 36백만원) 미만**
- **연간 총소득 : 신청인과 배우자의 다음의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**

① 근로소득(총급여액) ② 사업소득(총수입금액x업종별 조정률) ③ 종교인소득(총수입금액)
④ 이자·배당·연금소득(총수입금액) ⑤ 기타소득(총수입금액-필요경비)

※ 장려금 지급액은 총급여액 등(신청인과 배우자의 상기 ①, ②, ③만 합한 금액)에 의해 산정

구 분	단독가구	홑벌이가구	맞벌이가구
총소득 기준금액	4만 ~ 2,000만원 미만	4만 ~ 3,000만원 미만	600만 ~ 3,600만원 미만
최대 지급액	150만원	260만원	300만원

재 산

- **가구원 소유 재산 합계가 2020.6.1.기준 2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.(부채는 차감하지 않음)**
  · 주택, 토지, 건축물, 승용자동차, 전세금(임차보증금), 회원권,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, **금융재산 · 유가증권**

공통요건

- **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가 아닐 것**
- **대한민국** 국적을 가진 자 (대한민국 국적자와 혼인한 자 및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 포함)

붙임2 「기한 후 신청」 관련 주요 문답 사례

사례1 기한 후 신청기간이 지나면 신청할 수 없나요?

○ 2021. 12. 1.(수) 부터는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.

- 기한 후 신청기간은 신청기간 종료일(5. 31.)의 다음날부터 6개월 이내이며, 올해는 2021. 11. 30.(화)까지입니다.

사례2 9월에 장려금 신청을 하였는데 기한 후 신청을 해야 하는지

○ 올해 9월(1일~15일)에는 2021년 상반기(1~6월) 소득에 대해 장려금을 신청한 것입니다. 2020년 소득에 대해서는 신청요건을 충족하면 이번 달에 기한 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.

- 다만, 2020년 소득에 대해 반기(2020년 9월, 2021년 3월), 정기(2021년 5월)에 이미 장려금을 신청한 가구는 기한 후 신청대상이 아닙니다.

사례3 소득이 없어도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?

○ 장려금 제도는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가구를 지원하는 제도이므로 소득(근로소득,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)이 없는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.

사례4 폐업으로 현재 사업을 하지 않는 경우도 신청할 수 있나요?

○ 금번 근로·자녀장려금의 신청요건은 2020년 기준이므로 신청요건을 갖추었다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- 예를 들어, 소매업을 영위하다 2021년 3월에 폐업한 경우에도 2020년 매출액을 신고(종합소득세 신고 등)하고, 소득·재산요건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사례5 근로·자녀장려금 신청 시 반드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하나요?

○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 신청자 및 배우자는 확정신고 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않으면 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. (장려금 결정일까지 기한 후 신고를 하면 지급 가능)

다만, 아래의 경우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한 것으로 간주합니다.

① 일용근로자, 근로소득 등 원천징수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

② 단순경비율 적용대상 사업자로서 종합소득금액이 기본공제액(150만 원) 이하인 경우

③ 2명 이상으로부터 근로·공적연금·퇴직·종교인·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을 받은 상용근로자로서 종합소득금액이 기본공제액(150만 원) 이하인 경우

※ 원천징수되지 않은 소득이 있는 인적용역사업자는 '20년 12월까지 사업자 등록을 하고,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여야 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음

사례6 허위로 신청하면 어떤 불이익을 받나요?

○ 신청요건에 관한 사항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신청한 경우에는 그 사실이 확인되는 날이 속하는 해부터 2년간 근로장려금을 지급(환급)하지 않습니다.

*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사실과 다르게 신청한 경우에는 5년간